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되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개정
에 부합하도록 함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관련 절차 정비(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

립 절차에서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여 법률 개정 사항에 부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u> <u>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u> <u>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u> <u>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u> 1. <u>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u> <u>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u> <u>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u> <u>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u> <u>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u> <u>기업부 및 통계청</u>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u>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u> <u>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특</u> <u>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u> <u>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u> <u>도”라 한다) 중에서 추천하는</u> <u>2개의 시 · 도</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u>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u> <u>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시</u> <u>·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u> <u>하 같다) 중에서 추천하는 2개</u>	<u><삭 제></u>

의 시·군·구

4.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2개의 공공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삭 제>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이하 “조정지원분과위원회”라 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

<삭 제>

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삭 제>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생략)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략
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략위원회-----.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

----- 분쟁조정위원회

-----.

----- 분쟁조정위원회 -----

-----.

④ -----

-----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468